

「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단순 행사성 체육대회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 참여 기반의 문화·체육활동, 화합 행사,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 내 소통과 결속을 지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소속 공무원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 근거 신설(안 제8조제11호)
- 나. 소속 공무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·지원 근거 신설(안 제8조제12호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직사회 내 세대 구성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 증가라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, 기존의 집단 중심·일회성 복지 체계를 자발적 참여와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적 수요에 맞게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단순히 체육대회로 한정되었던 지원범위를 문화·체육 활동 및 화합 행사로 확장함으로써,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소통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(안 제8조제11호)
-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, 기존에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가족 친화 정책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.(안 제8조제12호)
- 또한 조례 내 용어를 ‘소속 공무원’으로 통일하여 그 적용대상을 명료화하였고,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기준 설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법적 당위성 역시 충족함.

-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기획시 특정 직급이나 연령대에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할 것이며, 아울러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시 1인가구 공무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시책을 검토하여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